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제16717호) 개정·공포 알림

1.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하고,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·벽지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제16717호)이 2019.12.3.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동 개정법률은 2019.12.3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(제16717호)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, 6개 지방청장(53개 전부서), 본부(49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관련협회

주무관	<b>이승현</b>	사무관	대결 2019. 12. 4. <b>박규나</b>	과장	전결
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11986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016 팩스번호 043-719-2000 / [ruhappy11@korea.kr](mailto:ruhappy11@korea.kr) / 대국민 공개